

#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 운영 규정

제정 2021. 11. 17.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교육부 「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지대학교 내에 설치하는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이라 함은 선취업·후진학을 활성화하고, 성인학습자 친화적 고등교육 학사체계 마련을 위해 운영 모델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대학의 체제를 성인학습자 중심의 평생교육 체제로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.

**제3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단을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(이하 “사업단”)이라 한다.

**제4조(사업기간)** ①사업기간은 최초 협약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. 다만,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기간의 변경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.

②사업단의 사업은 1년 단위로 추진되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차별 사업기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약내용을 따른다.

## 제 2 장 사업 및 조직

**제5조(사업)**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평생교육체제 구축 및 교육에 관한 사항
2. 평생학습 내실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
3.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
4. 세부 사업별 업무 추진 및 분기별 추진 실적 점검
5.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

**제6조(조직)** ①사업단에 단장을 두며,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그 운영을 총괄한다. 필요한 경우 부단장을 둘 수 있다.

②사업단장은 평생교육융합대학장으로 하고, 부단장은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성인학습자의 원활한 대학생활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성인학습지원센터를 둔다.

단, 성인학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④사업단에는 사업팀을 둔다.

### 제 3 장 위원회

**제7조(사업추진위원회)** ①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.

②사업추진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, 사업단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부총장, 교육연구처장, 기획평가처장, 입학홍보처장, 학생행복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교외 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

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비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의 기획 및 조정
2. 사업 관련 제도 개선
3. 사업비 가이드라인(안) 마련 및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8조(실무위원회)** ①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②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사업(부)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실무위원회는 교내 관련 부서 팀장, 교수, 직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

④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(안) 마련
2. 사업추진 상황 및 성과 수시 점검
3. 자체평가위원회 평가 피드백 자료에 대한 사업반영 적절성 검토
4. 기타 사업추진위원회 위임사항

⑤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(자체평가위원회)** ①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교외 전문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
③위원장은 기획평가처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④ 자체평가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수행한다.

1. 사업추진 결과 분석 및 평가
2. 성과지표 점검 및 달성여부 확인
3. 기타 사업평가와 관련된 주요사항

⑤ 자체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 제 4 장 사업비

**제10조(사업비 집행 및 관리)** 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련되는 재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급하는 교부금, 대학 교비, 기타 외부지원금으로 한다.

②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관리 운영 매뉴얼의 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자체 사업비 집행지침을 따르며 이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 예산·회계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11조(겸임수당)**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 활동에 참여하는 겸임 교직원에 대하여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 5 장 보 칙

**제12조(세부사항)**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3조(학부(과)내규)** 사업 참여 학부(과)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(과) 교수회의를 통해 제반 사항을 학부(과)내규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수행한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